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21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고동진

김승수 · 강선영 · 강대식

박수영 • 권영진 • 이달희

김소희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금융거래등과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상 금지행위 대상이 제한대 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 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안 제 4조의2 신설 등).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지정 등"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4항제1호"를 "제4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동결조치)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 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 리하는 자금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 ② 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소유 또는 관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조제4항에"를 "제4조의2 제1항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4항에"를 "제4조의2제1항에"로, "제4조제1항에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를 "같은 조 같은항에 따른 자금 또는 재산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4항에"를 "제4조의2제1항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조제4항에"를 각각 "제4조의2제1항에"로, "제4조제4항"을 각각 "제4조의2제1항"으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각각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같은 조 제4항에"를 "제4조의2제1항에"로, "같은 항 제2호에"를 "제4조의2제1항제2호에"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를 "자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 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 정)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 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 -----제4조의2제1항제 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 1ই-----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 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 <삭 제> 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 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 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
 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 ⑤ 제4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 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신 설> <삭 제>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동결조치)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

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이나 재 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 가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려 는 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 이 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같다)과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② 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한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의2(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생략)
 - 2. <u>제4조제4항에</u> 따른 허가의 거부 등 그 밖의 처분: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 ② ~ ④ (생 략)
-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 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 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

③ 제1항에 규정된 소유 또는
관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u>제4조의3</u> (이의신청 특례) ①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2제1항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
의 의무) ①
제4조의2
제1항에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자금 또는 재산과
<u> 관련된</u>
<u>.</u>
②

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등 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 거래등이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 작 또는 그 상대방
- 2. <u>제4조제4항에</u>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제4조제4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의2제1항에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제4조의2제1항에
제4조의2제1항-
<u></u> z}

2. <u>제4조의2제1항에</u>
제4조의2제1
ŏ}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
상자		

- 3.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u>같은 조 제4항</u>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같은 항 제2호에</u> 해당하는 행위를 한 <u>금융거래등제한대</u> 상자의 상대방
- 4. 5. (생략)
- ③ ~ ⑦ (생 략)

<u>자</u>
3
제4조의2제1
<u>히</u>
<u>제4조의2제1항제2호에</u>
<u></u> 자의
_
4.•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